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9
------	------

2023. 12. 1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0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포괄적 기능의 ‘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함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성평등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설치 조항을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 ‘자문’ 조항으로 개정
- 나.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설치 관련 조항 삭제

Ⅲ.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됨.

나.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운영 현황

-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성인지 예산제의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제정되었음.
- 그리고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가 구성·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 2월 위원 임기 만료 이후 위원회 통합 정비를 위해 신규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성인지예산운영협의체 개요 >

- 구성 : 총 13인 (임기: 2021.2.15. ~ 2023.2.14.)
 - 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 당연직(4) : 예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재무과장,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위촉직(9) : 시의회(2), 성평등위원회 추천(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추천(1), 여성단체(1), 기타 전문가(4)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선정 기준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성별, 청년, 장애인 비율 고려한 위원회 구성
- 기능 :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 지침서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한편 서울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난 2012년에 ‘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어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는바,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와 ‘성평등위원회’가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중복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적 측면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주요 개정 사항 검토

- 서울시는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2023.3.31.)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다른 위원회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폐지하고, ‘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되(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안 제20조제1항),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
- 이와 같이 성평등 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분절되어 논의되던 사항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할 수 있음.
- 다만, 기존의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성평등위원회’의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관련된 기타 자문 내용은 ‘성평등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기능 조정을 통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인바(2023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2023.7.4.),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위원회 통합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의 개정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1항의 분과회의는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젠더폭력 예방·안전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 노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29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포괄적 기능의 ‘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함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성평등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설치 조항을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 ‘자문’ 조항으로 개정
나.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설치 관련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양성평등담당관(여성가족정책실), 재무과(재무국) 협의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6. 8. ~ 6. 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소정 (☎2133-6828)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8조에 따른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설치 등)”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문)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평등위원회는 이에 응한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12조(중전의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2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제9조에 규정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침서 등) ① ~ ③ (생략)	제6조(지침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8조에 따른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④ ----- -----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 ----.
제8조(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자문)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평등위원회는 이에 응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	

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
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
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
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
다)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
지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
서의 장

3. 시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
의 장

4.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장

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삭 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별영
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
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
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삭 제>

<삭 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
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

4. 협의체 활동에 장기간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
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삭 제>

<삭 제>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며,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 담
당사무관이 된다.

<삭 제>

제15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삭 제>

②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위
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
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
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자문은 협의체
의 자문으로 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삭 제>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20조(협업체 운영기관 등) ①

협업체와 실무협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
시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
업체 및 실무협업체 운영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17
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
· 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
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 제23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17조부
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12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
6조 및 제7조, 제9조에 규정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서 수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21조부
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현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해당 개정안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소정 주무관(02-2133-6828)